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48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송언석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광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신동욱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이성권 · 이양수 · 이인선
이종배 · 이종욱 · 이철규
이현승 · 이소희 · 임이자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정희용 · 조정태 · 조배숙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한기호 · 한지아 의원
(10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이며,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과 관련하여,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간주하는 바,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유예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6개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u>6</u>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u>1</u> 년 <u>6</u>개월----- -----.